

의안 번호	1224
----------	------

##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연월일 : 2016. 3. 2.(수)
- 나. 제 출 자 :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회부 : 2016. 3. 4.(금)
- 라. 위원회심사 : 2016. 3. 11.(금)

### 2. 제정이유

입간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입간판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고, 조례 서식에 표시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의미의 명확화를 위한 문구 추가(안 제13조제1항제2호)
- 나.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·신고 수수료 개정 : 입간판 수수료 신설
- 다. 별지 제5호서식, 별지 제1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
- 라. 별지 제12호서식에 성별란 추가

### 4. 근거법규

- 가.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6의2호
- 나.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2

### 5. 검토의견

- 의미의 명확화를 위하여 문구를 추가하고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입간판이 신설되어 입간판 신고 수수료를 신설하고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에 따라 주민번호가 기재된 별지서식을 생년월일로 교체하고 성별란을 추가하는 것으로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## 〈 관 계 법 령 〉

### 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

제3조(옥외광고물의 분류) 옥외광고물(이하 "광고물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. <개정 2014.12.9.>

·  
·  
·

6의2. 입간판: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, 아크릴 또는 조레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·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

### □ 개인정보 보호법

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
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